

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 대한석유협회 -

대한석유협회(회장 張洪宣)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석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9월 20일 동자부에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향후 국내석유류 수요증가 및 수요구조의 변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석유류 안정공급을 할 수 있는 기존정유업계의 석유정제시설의 증설 및 개조에 대해서는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석유수출입업 자유화에 대해서는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익성이 좋은 제품만을 선별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어 석유정제업자와 불평등 경쟁관계가 될 뿐 아니라 석유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는 분기별 수출입계획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수급안정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석유협회는 또한 석유류 수요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석유유통부문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부산물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부산물로서 양질의 석유제품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정유사의 생산계획에 차질을 가져와 국내석유수급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석유판매업자와 구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동자부는 석유수요의 증가와 소비구조의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석유산업관련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석유산업의 대외개방화에 대비하여 산유국 및 다국적 석유기업의 비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자로 석유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국제석유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정부로 하여금 석유비축사업 및 국내의 유전개발사업을 석유수급계획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규정함.(제3조)
- 석유소비증가 및 소비구조의 고급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석유정제시설 증설(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 제외) 및 시설개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제7조)
-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제11조)
- 석유수출입절차 간소화등 수출입 원활화를 도모키 위해 석유수출입업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6조)
- 석유시장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석유저장능력 보유의무부과 및 민간석유비축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신설)
-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를 석유사업기금 징수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석유수입업자에게도 국내정제업자와 동일하게 석유수입업자가 취득한

- 차등이윤에 대해 석유사업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 3)
- 석유사업기금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직접 정부가 관리토록 규정함.(제17조의 5)

- 석유품질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석유공급자간에 판매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표표시제를 도입함.(신설)
- 이와 같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석유협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한 의견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2.12.31 法3645)</p> <p>1.“석유”라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p> <p>2.“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3.“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이하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p> <p>4.“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5.“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6.“석유정제업자”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p>		<p>제2조(정의) 이법에서-----</p> <p>1.-----</p> <p>2.-----</p> <p>3.-----</p> <p>4.-----</p> <p>5.-7 생략</p> <p>8.-----</p> <p>등록을 하고-----</p> <p>9.“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구수정 •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7.“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第3條(석유수급계획) ① (생략) ② (생략) 1-3호(생략) (신설) (신설)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제7조(석유정제시설등의 허가) ① 석유정제사업(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2.12.31, 제3465> (신설) ② (생략)</p> <p>第10條(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의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p>	<p>제3조(석유수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호(현행과 같음) 4.정부보유 석유비축시설 및 비축량 5.국내외 유전개발사업 6.4호와 동일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석유정제시설등의 허가) ①..... 신설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p> <p>② 석유정제업자가 그 정제시설을 증설(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조(석유수급계획) ① (찬성) ② (찬성)</p> <p>③ (찬성) ④ (찬성)</p> <p>제7조(석유정제시설 등의 허가) ① (찬성)</p> <p>② (찬성)</p> <p>제10조(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자는.....</p>	<p>•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 신고의무를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p>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석유수출입법의 신고)</p> <p>①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신설)</p>	<p>제11조(석유수출입법의 신고)</p> <p>① 대외무역법.....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석유수출입법의 시설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p> <p>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제5조 제4호 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수출입법"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p> <p>① (찬성)</p> <p>② (찬성)</p> <p>③ (찬성)</p> <p>④ 석유수출입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별 석유제품별 수출입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익성이 좋은 제품만을 선별적으로 수출입할 수 있어 석유정제업자와 불평등 경쟁관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석유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p>

현행 조문	동자부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第12條(석유판매업의 허가)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의 판매업 및 일정규모이하의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法3645></p>		<p>⑤제5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제9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승계와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제4호 중 “제13조 제1항”은 “제13조 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제9조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본다.</p> <p>제12조(석유판매업의 신고 등)</p> <p>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허가기준 및 신고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로 매분기별로 수출입계획을 제출케 하여 국내수급안정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과 동일하게 석유수출입업의 승계와 신고에 관한 규정 필요 •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부산물이므로 양질의 석유제품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를 허용할 경우 정유사의 계획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석유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석유판매업자와 구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p>第13條(허가의 취소등)</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p>	<p>제13조(허가의 취소등)</p> <p>①.....</p> <p>1.....</p> <p>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조</p>	<p>제13조(허가의 취소등)</p> <p>① (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능력 보유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규정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증설 또는 개조할 때 3-5 생략</p> <p>신설 6-10 생략</p> <p>②동력자원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수출입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2.12.31 법3645, '86.5.12, 법3839> 1-3. 생략</p> <p>③생략 1-6 생략</p>	<p>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개조할 때 3-5호 (현행과 같음) 6.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할 때 7-11(현행 6-10과 같음)</p> <p>②.....그 석유수출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생략)</p> <p>③..... 1-5(생략) 6.....제11호의 1에 해당한 때 7.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표시 의무를 위반한 때</p>	<p>②..... 1-3 좌동 4.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에 미달한 때 5.(입법예고안 4호와 같음) 6.제1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별 수입구성비를 위반하여 수입한 때</p> <p>③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판매자를 포함한 다.)... 1..... 2.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 기준 또는 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4...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7 좌동</p>	<p>•등록시에만 시설을 구비하고 등록후에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방치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第15條(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양등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15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p> <p>①동력자원부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 지변 또는 국제석유시장의 악화등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변동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p> <p>.....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산업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가격통제에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를 배제할 필요있음. • 가격통제의 사유 소멸시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p>第16條(원유·천연가스의 구입계약등의 승인)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구입계약이나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법3645)</p> <p>(신설)</p>	<p>제16조(석유수출입의 승인 등)</p> <p>①석유수입계약,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또한 같다.</p> <p>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승인에 갈음하여 수출입 물량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석유수출입의 승인 등)</p> <p>①석유수입계약,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석유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석유수출입업자(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가 석유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의 구입계약, 수출계약의 승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계약에 대한 수송관련 사항은 민간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지역별로 장기수송계약 체결시 유종간 가격차이에 의한 지역별 도입물량의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제 전환 필요 •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시 유연한 대응위해 신고제 전환 필요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신설)</p> <p>第17條(석유수급등의 조정)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석유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p> <p>제16조의 2(석유저장 및 비축 의무부과)</p> <p>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일정규모의 석유저장능력 보유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 경우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일정량의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능력수준 또는 비축수준의 결정과 기타저장 및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7항 (생략)</p>	<p>정하는 수입 석유제품별 구성비 범위내에서 수입하여야 한다.</p> <p>④ 입법예고안 2항과 같음.</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석유수입계약을.....</p> <p>제16조의 2(석유저장 및 비축의무부과)</p> <p>① (찬성)</p> <p>② (찬성)</p> <p>③.....</p> <p>석유저장능력 수준 또는 비축수준의 결정, 비축 소요자금의 지원방법과 기타 저장 및 비축에.....</p> <p>4-7항 좌동</p> <p>제17조(석유수급등의 조정)</p> <p>① 동력자원부장관은.....</p> <p>.....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p>	<p>•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민간계약의 자유 및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제1항은 삭제</p> <p>• 자구수정</p> <p>• 민간업체의 비축의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p> <p>• 석유의 긴급수급 조정권은 공급물량의 확보 및 불적유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조정명령 권한의 축소</p>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기하기.....	
		10호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시장 개방시 경쟁력 제고 - 소비자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p>第17條의 3(기금의 조성)</p> <p>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82.12.31, 법3645, '86.12 법9839></p> <p>1.석유수입 또는 석유제품 판매시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p> <p>2.국제원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국내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p> <p>3.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p> <p>4.제1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p> <p>5.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제17조의 3(기금의 조성)</p> <p>①.....</p> <p>1.....석유수입업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p> <p>2-5 (생략)</p>	<p>제17조의 3(기금의 조성)</p> <p>①.....</p> <p>1.....석유수입업자,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p> <p>2.국제석유가격의.....석유수입업자,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자가 취득한.....</p> <p>3-5 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p>第17條의 4(기금의 용도)</p> <p>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82.12.31 법3645, '86.5.12 법3839></p> <p>1.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p> <p>2.석유개발사업</p> <p>3.원유의 차등가격과 석유제품가격의 평준화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보전</p>	<p>제17조의 4(기금의 용도) (생략)</p> <p>1.....사업</p> <p>2-4호(현행과 같음).....</p> <p>5.석유소비절약 및 석유대체에너지 사업</p> <p>6.석유 및 석유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p> <p>7.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p> <p>8.(현행제5호와 같음)</p>	<p>제17조의 4(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p>1호(입법예고안과 같음)</p> <p>2호(현행과 같음)</p> <p>3.석유정제시설 고도화사업(신설)</p> <p>4.(현행3호와 같음)</p> <p>5.(현행4호와 같음)</p> <p>6.(입법예고5호와 같음)</p> <p>7.(입법예고6호와 같음)</p> <p>8.(입법예고7호와 같음)</p> <p>9.(입법예고8호와 같음)</p>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4.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p> <p>第18條의 2(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①석유정제사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그 품질을 검토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석유제품의 품질의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p>	<p>제18조의 2(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①..... ②.....위하여 한국 석유품질검사소..... 제18조의 3(석유제품의 상표표시) ①석유판매업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목적으로 표시·광고된 석유제품과 상이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된 석유제품과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p>	<p>제18조의 2(석유제품의 품질유지·검사) ①..... ②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석유제품의 수송을 업으로하는 자는 수송중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품질이 저하된 석유제품을 1항에 규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④제1항 및 제2항의..... 제18조의 3(석유제품의 상표표시) ①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된 상표와 상이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수송업자가 개입하여 석유수송을 전달하는 송유관사업자가 출현함에 따라 품질유지의무 대상자에 포함하여야함. • 상표표시제도 실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제도 실시상의 위반여부에 대한 입증문제를 해소필요(기만, 오인 목적) • 국민경제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유사간 제품교환은 예외인정 필요.

현행 조문	동자부 입법예고안	대한석유협회 개정안	개정사유
<p>第24條(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p> <p>2.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第26條(벌칙)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p> <p>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석유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한 개조한 자</p> <p>3.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p> <p>4.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p>	<p>석유제품의 표시·광고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방법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p>	<p>제24조(벌칙)</p> <p>2. 제18조의 2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제26조(벌칙).....</p> <p>1.</p> <p>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개조한 자</p> <p>3.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p> <p>4.(현행 4호와 같음)</p> <p>5.(현행 5호와 같음)</p> <p>6. 제1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별 수입구성비를 위반하여 수입한 때</p> <p>7.(현행 7호와 같음)</p> <p>8.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p>	<p>• 자구수정</p> <p>• 자구수정</p>

